

정부, 면허취소 강행 가능성…임직원 1900여명 생계 어쩌나

[진에어 면허취소 위기]

오는 30일 청문회 예정…짜여진 각본대로 결정 위한 요식행위 지적도
면허 취소시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할 경우 2000~3000명 생계 위협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다루는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지만 비공개 청문회를 고집하고 있는 점, 항공기 신규도입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론이 정해진 것 아니라는 지적이다.

진에어가 면허 취소 또는 면허취소 2~3년 유예 등의 처분을 정부로 부터 받을 경우 1900여명의 근로자들이 하루 이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진에어 협력업체들도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진에어 직원을 포함해 최소 2000~3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수 천명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항공사 면허 취소를 엄연히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담당 공무원의 면과를 위해 강행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누려왔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진에어 등기이사,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항공사업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면허 취소 여부를 다루는 공청회를 개최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问题是 정부가 공청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하는 점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비공개로 개최한 뒤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취소 유예 2~3년의 처분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 측은 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가 공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록 청문공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강행할 수 있다는 또 다른 근거는 이 회사에 대한 항공기 신규도입 허가 등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진에어는 최근 올해 도입 예정인

항공기에 대한 허가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진에어 노선 공급 증기에 대한 허가도 내주지 않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진에어 직원들은 거리 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25일 오후 광화문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의 조치

에 정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아시아나 항공과의 협평성 문제 ▲금융 투자 업계의 부정적 영향과 ISD 소송 가능성 ▲고객 피해와 경제적 손실 등의 논란이 발생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진에어 직원들 “국토부, 면허 취소 중단하고 사죄하라”

“항공법에 오류…모든 건 조현민과 오너 일가 잘못”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진에어 직원모임 ‘국토교통부 갑질’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진에어 직원 생존권 보장’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진에어 직원들이 국토부의 면허 취소 검토가 부당하다며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은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집회를 열고 “수천

명의 생계 수단을 한 밤에 날려버릴 진에어 면허취소는 절대 안된다”며 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경력을 쌓아서 진에어에 입사했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일을 한 것 말고는 잘못이 없다”며 “아시아나는 빼주고 진에어를 죽이려는 국토부의 행동은 권력을 앞세운 겁질”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모임은 이날 집회를 통해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우선 “항공법이 잘못됐으며 이를 27년간 방치하고 관리 감독하지 못한 국토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제라도 법을 바로잡고 국민과 진에어 직원들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잘못된 항공법을 차 치해도 모든 건 조현민과 오너 일가가 잘못한 일”이라며 “국토부는 오너 일가를 처벌하고 직원을 불도로 짓는 청문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마지막으로 “조현민과 오너 일가는 직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진에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등기이사로 재직시킨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가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충하는 항공법 규정…해석 두고 논란 가중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등기임원 금지 규정을 둔 항공법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와 외국인을 이시로 등재해 같은 문제가 불거진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 취소 청문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청문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최종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전 대

한항공 전무는 2010년~2016년 진

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다.

현행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법 보호를 위해 외국인 등기 임원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문제는 항공법상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각 조항 사이에도 상충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

외국인 등기임원을 두면 안 된다고 정한 항공안전법 제10조는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항공 면허를 기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

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1 이상을 소유하

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으로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이라고 해도 전체 임원의 과반을 넘기지 않으면 항공운송사업면허 및 유지가 가능하다.

문제는 항공사업법 9조는 다른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있다. 항공

사업법은 임원 중 ‘대한민국의 국

민이 아닌 자’가 있는 법인은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

사업의 면허를 가질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운송법 2개 조항이 상충하는 셈이다.

국토부가 외국인 등기임원 제한을 둔 본질적 이유는 무시한 채 법령 해석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이유는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이나 외국 자본의 지배를 막으려는 데 있다. 외국인 임원을 단 한 명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게다가 진에어는 조 전무가 입원으로 재직했던 2010년~2016년 동안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면허 개설을 3차례 신청하고 재발급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단 한 차례도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 까지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의 직무유기 역시 도미에 오른 상황이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